

의안번호	2218892
의 퇴 인	김영환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 계 번호	26B25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록사항의 정정)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제5항 신설)	재량규정
		제5항에 따른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6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등록사항의 정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으로서 직접 조사·측량을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조사·측량비, 현장조사비, 전문기관 위탁 비용 부담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법 시행 당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권정정 미이행 대상 건수, 그 중 권고 또는 행정지도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건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급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할 건수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정정대상 토지 현황에 따라 조사·측량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접 조사·측량 또는 관계 전문기관 위탁의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 수행과 위탁 수행 여부, 위탁 여부, 위탁수수료 산정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388-3735	jangwy93@nabo.go.kr